

수입제품범람, 豚價폭등 육가공산업 절박한 상황 탄력적 수입으로 균형 유지해야

본 회의는 지난 87년 7월 1일 돼지고기통조림, 90년 1월1일 소시지 제품의 수입자유화 이후, 값이 싼 육가공품의 수입량이 급증하여 국내 시장에 범람하고, 89년 말부터 원료 돈육가격은 유사 이래 최고가로 급상승하여 엄청난 충격과 원가부담 등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에 본 회의는 이들 값이 싼 수입품의 범람과 원료육 가격 폭등으로 이중고에 처해 있어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 물가안정 차원에서 다음 내용을 5월 26일 정부 각 부처에 건의한 바, 전제한다(편집자 주).

민주국가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진력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87년 7월에 수입개방된 돼지고기 통조림 제품에 이어 '90년 1월에는 국내시장의 50%를 점하는 소시지제품도 수입자유화되는 수입개방의 여건에서 엄청난 충격과 산업자체의 존립마저 위협을 겪고 있는 국내 육가공업체는 설상가상으로 90년 들어서는 육가공품 원가의 65% 점하는 원료인 돼지가격의 사상 유래없는 폭등으로 이제는 국내 육가공산업 자체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제공이 국내 육가공업계의 불합리한 경영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간 원료가격의 큰 격차에 있는데 국내의 돼지육가격을 별첨(1)과 같이 ₩1,818/kg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내산 원료 가격은 육가공품 수출국(미국, 덴마크)에 비해 2배의 가격이며, 특히 육가공품의 주종을 이루는 소시지육 부위의 원료가격은 2.5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격차는 '90년 들어 별첨(2)와 같은 국내 지육가 ₩3,000/kg까지 폭등함으로써 이제는 업계의 자구 노력이나 수입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 조정

만으로는 국내 양돈산업을 통한 원료 돈육수급 및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급면에서 본다면 국내 돼지 사육 적정 두수는 500만두 수준으로 추정되나 별첨(3)과 같이 '90년 3월의 사육 두수는 430만두이며, 6월경 404만두로 감소, 연말에는 422만두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현재의 가격폭등 및 사육 두수의 절대적 부족 등이 단기간 내에 안정될 수 없으며 또한 지난 4년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쏟아 개척한 돈육수출마저 국내 가격폭등 및 수급 부족으로 시장을 상실해 버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돼지고기통조림의 산업피해 구제신청의 결과, 관계당국에서는 건국 이래 수입관세는 매년 인하하여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세정책 방향이고 관세를 인상시 대외 무역관계에 있어서 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육가공업계의 원료가격차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일부 보완을 위해 한시적이거나 관세를 30%에서 50%로 인상하는 용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육가공업계의 어려움만을 덜기 위한 정책이 아닌 양돈산업 공히 안정적 발전을 기할 있기 위해서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격경쟁이 안되는 육

가공품의 수입자유화로 인한 외국제품 범람과 원료육 가격폭등으로 이중고에 처해 있는 업계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조속히 검토되어 금차의 극단적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특단의 용단을 다시한번 내려주시기를 양망합니다.

건의 사항

1. 국내 돼지가격의 “안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단력적인 수입정책” 병행 운영

생돈가격이 등급 또는 등량시에는 별첨(4)와 같이 0.6%에 해당하는 전업·기업 양돈가는 등락차에 따른 혜택이 있으나 99.4%에 해당하는 부업 또는 다두 사육하는 일반 농가는 그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육농가는 매년 감소('90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사육호수 31.5% 감소)하고, 신규 참여 농가도 없을 뿐더러 더우기 '90년 들어 나타난 현상은 과거의 폭락, 폭등 후 단기간내 회복되던 것이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선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수자원 보호에 따른 축산 배설물 처리비 과중 둘째, 농촌의 인력난 심화

셋째, 자돈 가격의 양등 등

이러한 구조 변화로써 현재의 수급부족(사육 두수 100만두 부족 출하두수 200만두 부족 : 지육 10만㎏)에 따라 국내 양돈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돈육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양돈농가의 생산원가에 적정한 이윤 확보를 고려한 수준의 “안정 기준가격”을 설정함과 함께 “탄력적 수입”으로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 제도는 '71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에서 실시되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일본 국내 돈육소요량의 27%를 수입하고 있음에도 국내 양돈산업 및 생산자, 수요자 공히 피해없이 잘 발전하고 있음은 수입개방이 국내 양돈산업 피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 실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지원책 강구

(1) 수출금액과 연계한 원료육 수입 허용

국내 육가공업계가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대일 돈육수출 지속의 효과뿐만 아니라 수입자유화에도 원료가격의 폭등으로 심각한 원가상승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계에 대한 일부나마의 경쟁력 보완 측면에서 업계가 돼지고기를 수출한 만큼의 금액 한도내에서 한정된 육가공용 원료육에 한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 경우, 육가공업계는 일본으로 등심, 안심 등의 고가부위를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어 지속적 일본 시장 확보가 가능하며 수출한 금액 만큼 안심, 등심 제외한 부위(소시지육 부위)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수준인 대만 등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다소나마 육가공업계의 원가중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돈가안정을 위한 심리적 파급효과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0년의 대일 수출은 향후의 돈가전망으로써는 6,000톤으로 전망되며 수출금액 해당분을 수입할시 수출량은 연간으로 12,000톤(240천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입하더라도 수입육의 원가는 지육 예산가격 @₩1,895/kg 수준으로 국내 적정 돈가수준을 하회하지 않습니다.

(2) 수출용 원료육에 대한 세액면세 등 지원책

대일본 수출국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수출 지원금을 돈육의 국제가격이 EEC 지역내 가격과의 차액(88년 340원~500/kg)을 감산하여 보조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돈육을 수출정책 품목으로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국제 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는 선의의 수출보조금 지원, 도축세 면세 등의 제반지원정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수입개방 순서와 오류 재 발생 방지

원료 가격차에 의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실정에서 원료육 개방과 동일한 캔 제품을 개방하고 곧이어 국내 50% 비중을 차지하는 소시지를 개방한 것은 수입개방정책의 큰 오류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 일본은 수입개방을 별첨(5)와 같이 육가공품의 소비수준이 높을 때에 원료육부터 개방하여 그 충격을 완화하고, 제품은 유통기일이 짧은 순으로 시일을 두고 추진하여 국내 농산피해를 극소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원료육 수입과도 사실상 같은 캔 제품부터 수입 자유화하여 3년만에 국내 캔 시장을 50%나 잠식하는 등 그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소시지도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제품의 수입이란 원료육 수입과 달라 그 생산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마저도 수출국에 헌납한 결과로서 차후 수입개방 정책을 검토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해 드립니다.

4. 제도적 개선마련 이전 조치

— 한시적 육가공용 원료 수입개방 허용

육가공품의 수입자유화와 관련하여, 국제무역에 있어 수입품과 대응하는 공정한 경쟁여건의 제공차원에서 육가공업계는 원료육에 한해 수입을 허용도록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당시의 상황은 국내의 양돈업계 또한 국내 제도하

에서 양돈원가에 비해 상당한 이익을 확보하고 있지않은 실정이었고, 사육두수에 따른 가격전망도 불투명하였던 실정이어서 정부당국에서도 원료육수입개방의 단안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육가공업계에서도 심정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만, 현황의 공급이 절대 부족으로 인한 가격폭등 상황은 도저히 근본적 대책이나, 정책방향의 수정없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극명하게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가격급등('90년 지육가 ₩2,500~₩3,000/kg 예상)의 지속은 수요자인 국민이나 육가공업계에 엄청난 부담과 피해를 주고, 현안의 물가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시어 국내 부족 공급량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육가공용 원료육 4만kg/년을 기준하여 국내 돈가 안정시기까지 수입을 허용 국내 양돈업계와 육가공업계가 공존공영하면서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별첨(1)

외국과의 육가공용 원료육 가격 경쟁력

(단위 : 원/kg, %)

		한 국			미 국	덴마크
		예1	예2	예3		
평균지육가격		1,818	2,200	3,000	1,005	983
위 가격지수		181%	209%	299%	100%	98
가 격 지 수	부위별 분포율					
	안심육 등 28%	100	100	100	150	150
	햄 육 31	100	100	100	90	90
	소시지육 41	100	100	100	70	70
부위별가격	안심부위	2,841	3,432	4,680	2,389	2,337
(지수보정후)	햄 부 위	2,841	3,432	4,680	1,433	1,402

원료정육가격)	소시지부위	2,841	3,432	4,680	1,115	1,090
소시지 부위 경쟁력		2.55배	3.08배	4.20배	1.00배	0.98배

★ 환율 @ 1000원/1DKR @ 1000원/1\$ ★ 정육율 45%기준과 88년 가격

(별첨(2))

'90년도 지육가격 대비

(단위 : 원/kg)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비	고
90년	1월	2,031		1,816		771			
	2월	1,974		1,995		652			
	3월	2,240		1,904		651			
	4월	2,563							
	평균	2,202		1,905		671			
	5월중 1~20일까지	2,773~3,018							
	4월까지 경쟁력	3.28배		2.84배		1.00배			

별첨(3)

돼지 사육호수 및 두수 현황

(단위 : 천호, 천두)

구	분	'90.3 (1)	'89.12 (2)	'89.3 (3)	증 (△) 감(%)	
					(1/2)	(1/3)
사육호수		165	198	241	△16.7	△31.5
총두수		4,303	4,801	4,932	△10.4	△12.8
2개월미만		1,267	1,246	1,593	1.7	△20.5
2~4개월		1,445	1,813	1,553	△20.3	△ 7.0
4~6개월		938	1,045	942	△10.2	△ 0.4
6~8개월		72	75	112	△ 4.0	△35.7
8개월이상		581	622	732	△ 6.6	△20.6
모돈수		594	627	771	△ 5.3	△23.0
6~8개월		53	48	85	10.4	△37.6
8개월이상		541	580	686	△ 6.7	△21.1

별첨(4)

전업·기업 양돈가와 부업·다두사육 농가 대비

(단위 : 두, 호)

사육규모	분	류	사육두수	비율(%)	사육호수	비율(%)
1~19	부업농가		562,597	11.7	166,573	84.16
20~99	다두사육농가		1,017,592	21.2	22,655	11.44

소계	-	1,580,189	32.9	189,228	95.6
500~999두	전업양돈가	523,163	10.9	776	0.4
1,000~9,999 두	기업양돈가	804,212	16.7	338	0.2
10,000이상	대기업양돈가	181,510	3.8	11	0.005
소 계	-	1,508,885	31.4	1,125	0.6
합 계	-	4,801,104	100	197,933	100

별첨(5)

육가공제품 소비량과 수입 개방시기 대비

	본			국		
	주요내용	수입 순위	1인당 소비량	주요내용	수입 순위	1인당 소비량
1958	아시아올림픽		0.45K			
1964	동경올림픽		1.28			
1970	원료육수입개방	원료육	2.19			
1971	소시지수입개방	제품1	2.36	(※원료육은 수입금지)		
1972	햄, 베이컨수입개방	제품2	2.50			
1986	캔제품수입개방	제품3	4.01	아시아올림픽		0.2K
1987				캔제품수입개방	제품3	0.3
1988				서울올림픽		0.7
1990				소시지수입개방	제품1	1.0추정

정부, 돈육 수입 결정

한편 5월 28일 농림수산부는 최근 국내 돼지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량이 격감되고 육가공제품의 수요는 크게 신장하고 있으나, 원료육의 부족과 가격상승으로 육가공품 생산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돼지고기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육가공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돼지고기 수출업체가 육가공 원료육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수입추천대상 : 돼지고기 수출업체중 육가공원료육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
- 수입추천물량 :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2개월전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물량
- 수입허용기간 : '98.12.31까지 시한부로 허용하

되 그 이전에도 국내 돼지가격이 140천원(성돈 98kg 기준)수준 도달시는 수입 중단.

- 수입 부대조건
 - 축협중앙회로부터 수입추천 받은 물량은 추천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수입
 - 2개월 이내에 수입하지 않은 물량은 재추천 불허
 - 수입한 돼지고기는 육가공 원료육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시중 유통 및 타용도 사용 업체는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
 - 돼지고기 수출업체중 육가공업을 영위하지 않는 업체의 수입물량은 육가공 업체로 하여금 수입하게 하거나, 직접 수입 후 육가공업체에 납품하여야 하며, 육가공업체는 이를 구입 육가공원료로 사용하여야 함.

정책 보완없는 수입자유화 축산업 분야에 치명적영향

본 협회는 국내 육가공시장의 47%를 점하는 소시지 시장마저 수입 개방되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여 12월 9일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문을 제출, 국내

육가공 산업과 관련 양돈산업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냉철이 직시하여 본 건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 바, 내용을 전제한다(편집자 주).

민주국가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진력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87년 7월1일부로 육가공품인 돼지고기통조림이 수입 자유화되었고, '90년 1월부터는 소시지제품이 수입 자유화할 것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입 자유화 추세는 국제무역 관계상 통상마찰을 완화시켜야 하는 정부 차원의 입장과 고심도 해야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산에 비하여 엄청난 고가인 국내산 원료육 가격으로 인하여 자유화한다는 것은 해당 육가공산업 뿐만아니라 관련 국내 축산업 분야에 치명적 영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87년 하반기 수입 자유화된 돼지고기통조림은 '87년 566톤이 수입되었으나 '88년엔 1,660톤으로 3배가 증가되고 '89년에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2.6배 이상의 물량이 수입되어 수입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8년 29%에서 89년에는 50%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시 향후 3년 이내에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아무런 정책 보완없는 수입 자유화의 결과, 수입 켄 제품의 급신장으로 인해 국내 육가공업체는 생산량 감소 및 재고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생산의 위축은 국내 축산물의 대형 실수자의

역할과 기능마저 위축시켜 해당 양돈업체는 수요의 위축으로 엄청난 불황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87년 7월1일부로 아무런 정책적 사전 보완 조치 없이 돼지고기통조림 제품을 수입 자유화한 결과 국내 관계 산업에의 파급 효과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89년 8월부로 육가공업계 및 양돈업체의 수입 자유화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수입 자유화 사후에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육가공제품의 16%에 불과한 돼지고기통조림의 수입 자유화 영향이 정부가 업계의 산업피해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로 심각한 것임에 비추어 국내 육가공품 시장의 47%에 달하는 소시지제품이 당장 '90년에 아무런 정책 보완이나 제도의 개선없이 수입 자유화 되었을 때의 결과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즉, 소시지 제품이 수입 자유화 되었을 때에는 돼지고기통조림의 경우처럼 업계가 수입 자유화의 피해 정도를 증명하려면 상당한 수입실적을 바탕으로 하게되기 때문에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정부에 요구할 시간적 여유마저 없이 바로 해당 산업이 기존 기반마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우선 수입 자유화 해놓고 문제가 심각하면 그때서야 사후 조치를 하겠다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발상은 이제 켄 제품 수입 자유화만으로써도 충분히

그 댓가를 치렀다는 것을 정부에선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수입 자유화 영향의 근본적 요인이 수입품과 국내품의 엄청난 가격경쟁력 차에 있고, 이러한 가격경쟁력 차의 절대적 요인이 원료육 가격 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가격 차의 요인이 국내 업체의 이익의 확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원가의 60%를 점하는 원료육 가격의 큰 차에 기인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수출국의 원료육 가격이 국내 가격의 38%수준에 불과하고 또한 국내 업계의 관련 부자재, 포장재, 첨가제의 수입으로 인한 관세의 추가 부담 등 구조적 경쟁력 차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다시한번 일본이 육가공품의 수입 자유화와 관련하여 취했던 여러가지 보완 조치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1972년 햄, 베이컨 만의 일부 육가공품의 수입 자유화 이전, 일본 정부는 1971년에 이미 육가공 원료육 수입 자유화를 단행하여 업계로 하여금 사전에 원료육 및 제조 Cost의 내외 가격 차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상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고, 제품의 수입 자유화에 있어서도 수입 관세율을 SLIDE관세 및 차액 관세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수출국과 국내 제품의 원료가격 및 제조 Cost의 내외 차에 의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상쇄시키는 추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육가공업의 역사가 70여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자유화와 관련하여 업계에 세제, 금융상의 지원 등 정부의 지원폭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더욱 상온 유통 및 장기 보존이 가능하고, 반품의 위험이 없어 영세한 업체들도 수입이 가능한 캔 제품은 1986년에 들어서야 수입 자유화 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정부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일본의 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는데도 수입 개방에 따른 보완 조치를 국내에서는 적용되기는 커녕 오히려 해당 제품의 기본 관세율마저 매년 인하시키는 등 국내 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조치만을 취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9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소시지 제품의 수입 자유화는 적어도 5년 이상 수입 자유화 시기를 유예하여 유예기간중 국내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조치는 무엇보다 수출국과의 원료가격 차로 인한 가격경쟁력 취약을 극복해야 합니다. 업계로써는 원료육 수입 자유화가 가장 손쉬운 방안이겠으나, 국내 축산업중 유일하게 자금자축이 되고 있는 양돈과 양계산업에의 파급 효과와 800만에 달하는 부업 농가를 생각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내 양돈업계가 양돈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도 상존하는 원료가격 차에 대해서는 가공제품의 수입시 SLIDE관세 또는 차액관세 등을 적용하여 이를 상쇄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자유화의 내용에 있어서도 제품에 대한 제한이 필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원료육의 수입 개방시 내용에 있어서 냉장품과 냉동품을 구분한 것과 같이 가공품에 있어서도 냉동품과 냉장품을 구분하여 품목의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육가공품의 경우, 돼지고기통조림의 경우에서 잘 나타나 듯이 주요 수출국은 원료육의 가격이 국내에 비하여 엄청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덴마크, 네델란드 등 유럽국가와 미국이 될 것으로 통조림제품을 제외한 일반 햄, 베이컨, 소시지 제품은 제한적 유통기한으로 인해 냉동품으로 수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수입 자유화 내용에 있어 수입 자유화 품목을 냉장한 제품으로 한할 경우, 대량 수입은 상당폭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입 자유화 내용면에 있어서의 간접 규제 전략은 이미 일본에서 조처한 전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국내 육가공업계가 도입기에 불과한, 불과 10년이라는 일천한 산업역사를 갖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국내 식생활의 절대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적 산업이라는 중요성을 감안시, 아제 막 시장 개척기에서 값싼 외국산 제품의 맛에 국민들을 쉽게 동화시켜 버리는 수입 자유화 조처가 진행될 때, 국내 육가공업은 도산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육가공업을 국내 일반 식품산업으로 간단히 치부해 버리는 시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작금 생산비 이하 양돈 불황의 원인이 돼고기통조림의 엄청난 수입 증가의 결과라는 것을 양돈농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육가공업이 국내 양돈업을 위시한 축산업과 직결되는 점을 직시하여 육가공업도 농축산업과 같은 생존산업으로의 인식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자유화시에도 국내의 산업 발전과는 무관한 상업적 수입업체가 영리에만 급급하여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수입케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반면 양육 수출 또는 육가공품 생산조합, 단체들로 하여금 그 실적에 따라 수입케 하여 국내 제품과 수입품의 수급을 조절토록 제도를 운용한다면 가격 경쟁력 차를 업체 자체내에 흡수할 수 있어 국내 산업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업계로써는 다시한번 수입 자유화에 대한 건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드립니다.

첫째, '9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소시지 제품의 수입 자유화는 적어도 5년 이상 유예되어야 하며,

둘째, 동 유예기간중 국내 산업이 원료육 가격 차나 관세 부담 등에서 기인하는 가격경쟁력 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양돈사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영

세를 적용과 육가공산업에 소요되는 수입 자재에 대한 관세 등의 경감 또는 면세 등 제도적 개선 및 육가공 및 제품에도 소, 돼지등 원료를 처리하여 정육으로 판매시와 같이 부가세 면세를 기하여야 하며,

셋째, 5년후 수입 자유화 시에도 제도적 개선을 하더라도 상존하는 원료육 가격 차는 완제품 수입시 SILIDE관세 또는 차액 관세 제도를 운용하여 가격 경쟁력 차를 상쇄토록 하며,

넷째, 자유화의 내용에 있어서도 「밀폐용기에 넣어 살균한 것」「냉동한 제품」을 제외토록 하여 사실상 일반 포장의 냉장제품의 수입만 허용토록 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수입시에도 돈육 수출 또는 육가공 생산 실적에 따라 이틀 단체로 하여금 수입할 수 있게 제한 조치를 취하면, 수출량도 증가되고 생산 소비촉진으로 국내 축산물의 유통과 가격면에서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어 효과적 입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도 국내 육가공 산업과 관련 양돈 산업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여 본 건의가 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